

[붙임 2]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위원회 설치)”를“(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성북구의회 의원 1명
2. 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

3.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4.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
5.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구의회 의원·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질병,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

제9조(수당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위원에게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종전의 제10조) 중 “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